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정보공시의 공개를 강화하고 교육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공시하기 위하여 학교의 졸업자 진로 및 취업현황 공시시기를 기존 5월에서 수시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학정보공시 항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을 공시항목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공시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정보공시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제3조의1, 제3조의2의1)

나. 초·중등학교의 “졸업생의 진로현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 공시시기를 5월에서 수시로 조정(별표1 제13호 다목, 라목)

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립금 현황” 항목 신설(별표1의3 제4호 다목 신설)

라. 고등교육기관의 공시항목 중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 “재정 지원사업 수혜실적”을 공시항목에서 삭제(별표2 제12호 자목, 제14호 아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2 제1항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13호 다목, 라목의 공시시기를 “5월”에서 “수시”로 한다.

별표1의3 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적립금 현황	사립유치원	연1회	(결산)10월
-----------	-------	-----	---------

별표2 제12호 자목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을 삭제한다.

별표2 제14호 아목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3조(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및 그 시기는 외국인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과 같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 이하 생략 >	제3조(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및 그 시기는 외국인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과 같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u>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u> < 이하 생략 >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공시 횟수 및 시기 등) ①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 이하 생략 >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 등) ①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u>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u> < 이하 생략 >

[별표1]					[별표1]				
공시 정보 항목	공시 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공시 정보 항목	공시 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중, 고, 각 산업수출진흥 및 취업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학교	연1회	5월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중, 고, 각 산업수출진흥 및 취업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학교	연1회	수시
	라. 산업수출진흥 및 취업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학교	산업수출진흥 및 취업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학교	연1회	5월		라. 산업수출진흥 및 취업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학교	산업수출진흥 및 취업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학교	연1회	수시
[별표1의3]					[별표1의3]				
공시 정보 항목	공시 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공시 정보 항목	공시 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 원비 현황	전체	연2회	4월 10월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 원비 현황	전체	연2회	4월 10월
	나.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	전체	각 연1회	(예산) 4월 (결산) 10월		나.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	전체	각 연1회	(예산) 4월 (결산) 10월
	< 신설 >					다. 적립금 현황	사립유치원	연1회	(결산) 10월
[별표 2]					[별표 2]				
공시 정보 항목	공시 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공시 정보 항목	공시 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2. 교원의 연구·학성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12. 교원의 연구·학성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 삭제 >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야.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통계과	
연 락 처	(044) 203 - 6320